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합5674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전다운

피 고 1. B조합

2. C조합

3. D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기영

변 론 종 결 2021. 4. 16.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신탁부동산 내역'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4.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설정된 같은 목록 '우선수익권 내역'란 기재 각 우선수익권을 1,117,112,59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117,112,5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6. E과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지상 5층 집합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360만 원으로 정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5가합539517호로 E에 대하여, 감리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8. 5. 18. 'E이 공사감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공사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매트 기초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시켜 집합건물에 감리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E은 시공자 G, 설계자 H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27,76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E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578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2. 20. 원고와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E은 2018. 1. 4.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피고 C조합으로, 같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피고 B조합으로, 같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피고 D조합으로 하고, 각 수탁자를 I으로, 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E으로 하는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2018. 1.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I 앞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5. 3. 이 법원 2019가합528881호로 I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0. 12. 9.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피고들이 그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 1. 26.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 3. 8.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27,760,65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389,351,948원의 합계 1,117,112,598원(= 727,760,650원 + 389,351,9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E은 2018. 1. 4.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 E의 피고들에 대한 우선수익권 설정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우선수익권은 1,117,112,598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117,112,59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I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위 사건의 소장을 제출한 2019. 5. 3.경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우선수익권 설정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참조),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I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2019. 5. 3. 무렵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7.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9. 5. 3. I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E은 원고에게 727,760,65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책임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종전 소송에서의 주장에 비추어 원고는 위 소제기 무렵 확인한 관련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에게 사해의사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러한 인식에 터 잡아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제기한 종전 소송은 수탁자인 I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본건 소송은 우선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인데, 모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수탁자나 우선수익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수탁자인지 우선수익자인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청구원인 내지 주장내용이 동일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서 피고들을 우선수익자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2019. 5. 3. I과 함께 피고들을 상대로도 이 사건 소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I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 2개월이 넘게 지나서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I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원고로서는 E의 소극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E의 소극재산 내역이 정리된 I의 2019. 7. 26.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E이 채무초과상태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I을 상대로 한 소제기 당시 내심으로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E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무익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내심으로는 그와 같이 생각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상 그 시점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배온실, 판사 구현정

별지

부동산담보신탁과 우선수익권 설정현황

순 번	등기접수 번호	신탁부동산 내역	부동산담보신탁 체결 내역		우선수익권 내역
			신탁계약	신탁원부	
1	2018. 1. 5. 제1125호	경기도 김포시 J건물 K호	2018. 1. 4.자 신탁계약	2018-19호	피고 C조합 수익권리금 1,235,000,000원
2		위 건물 L호	2018. 1. 4.자 신탁계약	2018-20호	
3		위 건물 M호	2018. 1. 4.자 신탁계약	2018-21호	
4	2018. 1. 5. 제1126호	위 건물 N호	2018. 1. 4.자 신탁계약	2018-22호	피고 B조합 수익권리금 1,339,000,000원
5		위 건물 O호	2018. 1. 4.자 신탁계약	2018-23호	
6		위 건물 P호	2018. 1. 4.자 신탁계약	2018-24호	
7		위 건물 Q호	2018. 1. 4.자 신탁계약	2018-25호	
7	2018. 1. 5. 제1127호	위 건물 R호	2018. 1. 4.자 신탁계약	2018-26호	피고 D조합 수익권리금 689,000,000원
8		위 건물 S호	2018. 1. 4.자 신탁계약	2018-27호	

